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총리<br>(인사혁신처 소관) |
| 제출연월일 | 20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노동절(5.1.) 공휴일 지정을 위한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('26. 4. 6.)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노동절(5.1.)을 공휴일로 지정(제2조)

나.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(부칙)

※ 노동절 관련 「공휴일법」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규정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재입법예고(2026. 4. 10. ~ 4. 17.)

\* 제헌절(7.17.) 공휴일 지정 관련 동 규정 입법예고중('26. 3. 10.~4. 17.)

대통령령 제 호

##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5월 1일 (노동절)

7. ~ 11. (현행과 같음)

## 부 칙

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<br>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<br>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<br>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<br>공휴일로 한다. | 제2조(공휴일) 관공서의 공휴일은<br>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<br>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<br>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<br>공휴일로 한다. |
| 1. ~ 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 신 설 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의2. <u>5월 1일 (노동절)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~ 11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 ~ 1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인사혁신처 복무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| (044) 201 - 8521 |